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수수료 감면) 제3호중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환경오염도 검사”를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검사 및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로 하고 동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수수료 감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그 기능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환경오염도 검사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6.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 7. 의회에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 8.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목욕수원수 및 욕조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9. 도내에 소재한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검사수수료의 50%감면 <p style="margin-top: 20px;">〈 신 설 〉</p>	<p>제5조(수수료감면)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검사 및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u>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u>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